# 건설제도 알리미 2017.10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

## **1**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('17.9.19 개정/ '17.12.20 시행)

### ■ 개요

● 중소기업부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상공사 범위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판로지원법 시행령・시행규칙 개정・공포

#### ■ 주요내용

-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**대상공사 범위 조정**(시행령 안 제11조)
  - (현행) 20억 이상 공사 → (개정안) 40억원 이상 공사 ※ 협회건의 반영
- 제품별 직접구매 **대상금액 기준 상향** 및 **세부품목별 하한** 금액 설정(시행령 안 제11조)

구분	현 행		입법예고(안)
- 제품별 대상 금액	3천만원	•	4천만원
- 세부품목별 최소 금액<신설>	_		500만원

※ 협회건의 반영

【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('17.12.20)】

## **2*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·시행['17.9.22]

#### < 시행령 >

- 직접시공 확인의무 적용 공공기관의 범위(제30조의2제6항 신설)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
- 하도급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(별표6)
- 하도급대금 체불로 인한 처분횟수 2회 이상인 경우 처분 기준 상향
  - (기존) 영업정지 및 과징금 2개월·4천만원 → (개정안) 3개월·6천만원
- 미장·방수·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(별표1, 별표2)
- 미장·방수·조적공사업 명칭을 습식·방수공사업으로 변경

## <시행규칙>

-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(제25조의6 신설)
  - 공공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관련 서류\*를 통해 준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
    - \* 노무비 지급, 자재납품,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  - 발주자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시 키스콘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

- **전문건설공사 실적 세분화**(제25조, 별표 6,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)
-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
-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(별지 제17호, 제17호의2)
- 기재항목 중 **활용이 미미**하거나 중복된 정보\* 50여개 삭제
- \* 도급계약 변경사항, 공사대금지급조건,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·납품업체 정보,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
-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 **일부 항목 추가**
-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(제2조, 별지 제9호,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)
- 건설업 등록·변경, 양도·합병·상속 신청시 등록관청은 **주민** 등록표등본을 대신하여 초본을 확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
- 기타 서식 개정 등(별지 제1호, 제2호, 제8호)
  - '건설업 등록신청서'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 신설
  - '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'의 개인사업자 정보를 주민등록 번호에서 **생년월일로 변경**
  - 기타 주기적 신고 폐지('18.2.4. 시행)에 따라 건설업등록대장에 남아 있는 **주기적 신고 관련 사항을 삭제**

#### 【시행일】

- **시행령**('17.9.19. 개정)
  - '17년 9월 22일 부터 시행
    - 다만, [별표1] 및 [별표2]의 개정규정은 '18년 1월 1일부터 시행
- **시행규칙**('17.9.20. 개정)
  - '17년 9월 22일 부터 시행
    - 다만, 제25조, 제32조제1항, [별표3] 및 [별표4], '별지 제17호 ·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0호의 개정서식'은 '<u>18년 1월 1일</u> 부터 시행
    - ※ '별지 제2호서식, 제8호서식'의 개정서식은 '18년 2월 4일부터 시행

## [3]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개정·시행(17.7.31)

- 발주청, 시공평가를 평가기관에 위탁시 건설공사의 준공일 전 의뢰(제3조)
- 공동도급 방식의 시공평가 대상 명확화(제3조)
  - 공동도급: 대표사가 받은 평가 결과 부계약자에도 적용(현행과 동일)
  - 분담이행 : 분담업체별(현행과 동일)
  - <u>주계약자</u> : 주계약자 계약 건설공사만 평가하고, 부계약자는 제외(신설)
  - 혼합방식 :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평가(신설)

- 발주청의 시공평가 결과 국토부 제출 시기 단축\*(제6조)
  - \* 매년 3월말 →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
  - 평가기관(시설안전공단)은 평가결과를 건설업자에게 제공
- 시공평가 평가시기\*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일치(제12조)
  - \* 다음해 2월말 → 공사준공 후 60일
- 발주청의 건설업자 평가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(제17조)
  - 건설업자는 요구받은 날로 20일 이내 제출
- 종심제 공사구분 분류 따라 평가대상 공사 분류(제18조, 별표 11)
- 토목: 교통시설, 수자원시설, 기타토목
- 건축: 주거, 비주거
- 시공종합평가 대상의 기준 정비 및 평가방식 개선
- **공동이행방식**은 대표자만, 분담이행방식은 모든 구성원(제19조)
- **발주청별 평가조정 근거 삭제**하고 공사금액 가중치만 적용(제25조)